

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 
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차인영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2. 2. 11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 
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448호로 2022년 1월 24일 차인영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~제3조)

나.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(안 제4조)

다.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처리(안 제7조~제9조)

마. 부실공사의 측정 및 조치(안 제10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
다. 입법예고(2022. 1. 25. ~ 2. 3.) 결과 : 의견 없음.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○ 본 제정조례안은

영등포구와 영등포구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.

##### ○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, 적용범위는 영등포구(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포함), 구가 설립한 공사·공단, 구가 출연한 출자·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규정함.
-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영등포구청장은 현장점검, 품질관리, 부실공사 측정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, 공사감독은 현장 수시 점검 등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,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 공사를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7조에서 제8조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·처리 하기 위한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「서울특별시

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, 신고는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,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안 제9조는 신고센터의 장은 부실공사 신고 접수시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발주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함.
- 안 제10조는 구청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여부를 신속히 측정하고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 ○ 검토결과,

대규모 인명,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대책, 지도·감독, 부실공사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건설산업기본법

**제2조제4호(정의)** “건설공사”란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, 조경공사, 환경시설공사,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·유지·보수하는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)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- 가.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
- 나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
- 다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
- 라. 「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

## 2 건설기술 진흥법

**제49조(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)**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, 계약서,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,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**제53조(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)** ① 국토교통부장관, 발주청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인·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, 건축설계, 「건축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(이하 “타당성 조사”라 한다)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. <개정

2018. 8. 14., 2019. 4. 30., 2021. 3. 16.>

1. 건설사업자
2. 주택건설등록업자
3.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(「건축사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)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

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별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1. 3. 16.>

③ 발주청과 인·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별점을 종합관리하고,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별점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, 불이익 내용, 별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54조(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)**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,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,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5. 18., 2018. 12. 31., 2019. 8. 27.>

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(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)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12. 31.>

③ 발주청(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·허가기관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,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(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)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8. 27.>

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

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, 2019. 8. 27.>

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12. 31., 2019. 8. 27.>

**제55조(건설공사의 품질관리)**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(이하 “품질관리계획”이라 한다)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(이하 “품질시험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·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4. 30.>

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14., 2019. 4. 30.>

③ 발주청, 인·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4. 30.>

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·승인 절차,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·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

**제46조(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)**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. <개정 2020. 1. 7., 2021. 9. 14.>

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(이하 “주요 구조부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.

1.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
2. 「건축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
3. 교량의 교좌(橋座) 장치
4. 터널의 복공(覆工) 부위
5. 댐의 본체 및 여수로(餘水路)
6. 상수도 관로(管路) 이음부
7.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
8.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